

○ 국민연금이란

01.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02. 국민연금의 필요성

▶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질병·노령·장애·빈곤 등의 문제는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기 보다는 개인의 위험차원에 머물러 있어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아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해오던 대가족 제도의 해체로 노인부양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국가적으로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이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과 생활보호, 의료보호 등과 같은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1970년까지만 해도 구호사업 및 구빈정책 위주였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70년대 후반에 실시되었던 의료보험이나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로 인해 1980년대 이후부터 그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광의]	사회보장[협의]	사회보험 :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실업)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적부조 :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보호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부녀자·아동·장애자복지 등)
	관련제도	주택 및 생활환경, 지역사회개발, 공중보건 및 의료 영양, 교육, 인구 및 고용대책, 인구조절계획

이 중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 국민연금의 필요성

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이 2000년 7.2%로 노령화 사회(UN 기준 : 7%)에 진입한 후 2019년과 2026년에는 각각 고령사회(UN 기준 : 14%)와 초고령사회(UN기준 : 20%)로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의 이행기간이 각각 19년과 7년에 불과해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노인인구 비율 7%)>

구분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우리나라
고령사회(A)	115년	40년	71년	24년	19년
초고령사회(B)	41년	40년	15년	12년	7년

- A : 고령화사회(노인인구 비율 7%)에서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
- B :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

Ⅰ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이유는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신생아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80년 2.83명이던 한국의 출산율은 2005년에 1.08명으로 떨어져 세계에서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최근 30년 동안 선진국 인구 통계상 최저 수준입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생산가능인구 6.6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지만 2026년에는 생산가능인구 3.2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하는 실정입니다.

Ⅰ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평균수명이 짧고 노년인구의 수가 적어 노인은 농경사회 지혜의 원천으로, 대가족 제도의 어른으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노년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 사회, 핵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노인을 존경의 대상으로 보다는 부양의 대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시각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노인들에게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족구조, 부양의식 변화 등으로 인해 사적부양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고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인 공적부양제도인 국민연금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Ⅰ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지금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 준비냐?”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20, 30년 후의 노후준비를 왜 벌써부터 하느냐?”며 노후준비를 미루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지역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노후대책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후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노후를 준비하는 직장인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소득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렵고 개인연금제도 또한 대다수가 중도해지 하는 등 노후보장수단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빈곤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Ⅰ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생계대책이 필요합니다.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개인 또는 가족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간의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연금 도입과 발전

▶ 도입준비 단계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60년대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으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1973년 발생한 석유파동의 영향에 의한 경제 불황으로 197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제도를 무기한 연기하게 됩니다.

이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실행되고 이 기간 동안 경제가 다시 발전하여 국민부담능력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 실시를 위한 제반 여건이 성숙되기에 이릅니다.

▶ 도입 및 실시단계 (1986년 국민연금법 개정 및 1988년 제도시행)

노동시장 확대와 지속적인 출생률 저하 등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1986년부터 종전의 국민복지연금 제도를 수정·보완하여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는 기금운용 등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1987년 9월에 독립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확대단계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국민연금제도는 1992년 소득보장 혜택이 더욱 절실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당연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 1995년에는 신경제 5개년 계획 및 WTO 체제하의 농어촌 발전 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지역에까지 국민연금제도를 확대하였고, 1999년 4월 도시지역에까지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렸습니다.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시기	내용
1973. 12. 24	국민연금복지법 공포(석유파동으로 시행 연기)
1986. 12. 31	국민연금법 공포 [법률 제3902호] (구법 폐지)
1987. 09. 18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88. 01. 01	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992. 01. 01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993. 01. 01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1995. 07. 01	농어촌지역 연금 확대 적용
1999. 04. 01	도시지역 연금 확대 적용 (전국민 연금 실현)
2000. 07. 01	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2001. 11. 01	텔레서비스 시스템 전국 확대 운영
2003. 07. 01	사업장 적용범위 단계적 확대 (근로자 1인 이상 법인·전문직종사업장)
2006. 01. 01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전체)

○ 국민연금의 특징

■ 국민연금의 특징

■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은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 노후준비를 할 수 없다', 부유한 사람 또한 '별도의 노후준비가 필요없다'고 가입을 기피하고, 젊은 층의 경우는 '먼 훗날의 노후를 굳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후빈곤층이 확대되고, 이것이 사회문제화 될 경우 결국 국가는 빈곤해소의 문제를 조세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본인의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노후의 일정부분을 책임지게 되는 이중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세대내 소득재분배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포함시켜 실현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소득 계층"의 경우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고소득 계층과 비교하였을 때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반면, "고소득 계층"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러한 연금혜택이 적은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급하는 연금급여액(수익비)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러한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소득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 세대간 소득재분배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제도 도입초기단계 가입자의 제도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미래세대는 자신의 노후만을 준비하면 되지만 국민연금 초기가입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노후는 물론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어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높여가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보다 연금제도를 먼저 시행한 외국의 경우에도 초기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

하여 경제발전 정도, 부담능력, 연금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보험료를 높여가고 있습니다.(미국 2% →12.4%, 독일 5% →19.9%)

만약, 국민연금가입자가 매년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소득월액으로 1988년부터 30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의 수익비는 2.8인 반면, 1999년부터 30년 동안 가입한 동일소득 가입자의 수익비는 2.0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제도도입 초기 가입자의 수익비가 연금제도가 성숙한 이후 세대의 수익비보다 높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가입세대는 미래세대로부터 일정한 소득지원을 받는 세대간 소득재분배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Ⅰ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복지국가들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연금제도가 성숙되면서 부과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Ⅰ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정도(1~3급, 4급은 일시금 지급)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존속하는한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율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연금입니다.

Ⅰ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88년도 100만원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2009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면 약 468만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또 연금지급 중에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율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물가가 매년 3%p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2007년 1월에 40만원의 연금을 받을 경우 20년 뒤에는 약 72만2천원으로 인상됩니다.

가입유형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 지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

01. 사업장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 즉, 당연적용사업장을 말합니다.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들을 사업장가입자라고 합니다.

02.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종별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 도달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01. 사업장의 범위	02. 사업장의 가입	03.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04. 사업장의 분리적용	05. 사업장의 통폐합	06. 사업장의 탈퇴
07.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 사업장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하며, 사업소, 영업소, 사무소, 점포, 공장 등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사업장에 해당됩니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3호). 이 경우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 사업장의 가입

■ 당연적용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이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당연적용사업장의 범위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변화하였는데, 처음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에는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하였으나 이후 제도를 점차 확대하여 현재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됩니다.

■ 신고대상사업장

현재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로서, 민법, 상법상의 개인이나 법인, 특별법상의 법인체 여부, 영리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는 물론,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인회사, 대사관 등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사업장가입대상임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당연 가입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 포함)를 말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의 사후정산 제도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가입 적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 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적용을 합니다. 이로써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Ⅰ 신고대상이 되는 사용자 및 근로자

당면적용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요건에 해당될 경우 가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다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음.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지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지급권을 취득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포함.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 1개월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임
 -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대학시간강사
 - ②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하길 희망하는 자

근로계약 여부 또는 근로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거나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입니다.

• 사용자

국민연금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업주"라 함은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기업주를,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을 가리키며, "사업경영자"라 함은 사업경영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예 : 법인의 대표이사)를 말합니다.

• 근로자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도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사용종속관계에 의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그의 명령에 따라 구체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Ⅰ 신고의무자: 사업장 사용자

Ⅰ 신고기한: 당면적용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Ⅰ 신고장소

각 사업장 주소지 근처의

-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근로복지공단 지사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Ⅰ 신고방법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우편,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및 EDI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적용사업장 가입 신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사업장적용신고서 1부
- ②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1부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필요시)

Ⅰ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을 하지 않거나 지체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신고를 지체하거나 해태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14조 제3항에 의거 직권가입 조치 또는 국민연금법 제129조 제1호에 의거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이 향후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Ⅰ 내용변경과 내용정정

“내용변경”은 이미 신고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된 경우에 이를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예: 전화 번호, 주소)을 말합니다. 내용변경은 사업장의 법인격이 계속하여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용정정”은 고의, 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거나 처리된 사항을 바르게 정정하는 것(예: 사업장적용 일정정)을 말합니다. 내용정정은 본래의 올바른 사실 관계 발생일로 소급하여 정정하게 됩니다.

Ⅰ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Ⅰ 신고기한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Ⅰ 신고장소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근로복지공단 지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하실 필요없이 한 기관에서 4대보험 공통신고서식으로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Ⅰ 신고방법

내용변경 또는 정정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1부(내용정정도 함께 씁니다)
- ② 필요시 사업장 내용의 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 등본 등)
내용변경 또는 내용정정을 신고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필요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경미한 항목인 경우에는 입증서류 없이 해당 항목을 변경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정정)항목		입증서류
사업장	명칭(상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 ※ 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소재지(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용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전화번호, 팩스번호, 우편번호, 사업장 홈페이지 주소, 사업장 이메일주소 등		입증서류 불필요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가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 등 권리·의무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내용변경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개인사업장은 탈퇴 신고하고, 사용자가 변경된 사업장 또는 새로 설립된 법인사업장은 신규 가입 신고하여야 함)

▶ 사업장의 분리적용

┆ 분리적용이란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있는 하나의 사업장을 2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사업장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여러 개의 사무소를 가진 사업장이나 규모가 큰 사업장이 국민연금업무를 신속·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사업장이 희망하는 경우에 그 신청에 의하여 분리하게 됩니다.

┆ 분리적용 대상

분리적용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①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권리의무 주체 동일)이면서 통합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
- ②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적용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1) 특정기업과 일반적인 거래 이상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고 그 지배하에 있는 계열사업장 또는 협력업체
 - 2) 하나의 사업장이 2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리되었으나 법인격이 서로 다른 사업장

┆ 신청자: 분리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의 사용자

┆ 신청기한: 분리적용을 희망하는 때

┆ 신고장소: 각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방법

분리적용 신고는 아래의 가입 유형에 따라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본점 및 지점이 모두 새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 본점과 지점이 각각 신규 가입 신고하되,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서에 분리적용 해당 여부 체크 및 본점(모사업장) 내역 기재

- 사업장 적용신고서 1부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본·지점 등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 법인등기부 등본 등)

②본점은 이미 가입되어 있고, 지점을 신규 가입하려는 경우

- 사업장 적용신고서 1부 : 분리적용 내역 등 기재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 본 지점 간에 전 출입하는 가입자는 분리적용사업장 가입자 전입신고서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신고서에 기재
- 본·지점 등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 법인등기부 등본 등)

③ 본점 및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 : 분리적용할 해당 지점만 추가로 사업장 분리적용 신청

- 분리적용사업장등록신청서 1부
-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1부(본·지점 간 전 출입이 있는 경우)
- 본·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예 : 법인등기부 등본 등)

Ⅰ 분리적용 사업장간의 가입자전출입 신고

분리적용된 본지점 간 가입자의 전출입이 있는 경우, 전입 사업장의 사용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분리적용사업장가입자전입신고서"를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전출사업장에서는 별도의 전출(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Ⅰ 분리적용의 해지(탈퇴) 신청

본점과 지점을 분리적용하고 있으나 분리적용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본점 사업장은 분리적용사업장가입자전입신고서를 제출하고, 분리적용을 해지(탈퇴)하는 지점 사업장은 분리적용사업장해지신청서에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 신고서를 첨부하여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분리적용이 해지되는 지점 사업장의 가입자는 본점 사업장으로 전입 처리됩니다.

② 사업장의 통폐합

사업장의 통폐합이란 기업합병 등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통폐합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합병하여 1개의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하는 "신설합병"과 하나의 사업장이 다른 1개 이상의 사업장을 흡수하는 "흡수합병"이 있습니다. 사업장 통 폐합의 경우 합병에 의해 신설되거나 존존하는 사업장은 흡수되어 해산(폐업)되는 사업장의 체납보험료 등의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Ⅰ 신고대상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에 의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① 국민연금업무를 실제로 하게 될 사업장
- ② 탈퇴대상 사업장

■ 신고자: 통 폐합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 사용자

■ 신고장소: 각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고방법

- ① 신설합병의 경우
 - 신설되는 사업장 : 사업장 신규 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 신고
 - 해산(폐업)되는 사업장 : 사업장 탈퇴 처리 절차에 따라 신고
- ② 흡수합병의 경우
 - 흡수하는 사업장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되 취득 유형부호를 "9.전입"으로 하여 신고
 - 흡수되는 사업장 : 사업장 탈퇴 처리 절차에 따라 신고

▶ 사업장의 탈퇴

사업장 탈퇴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조업중단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 상태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고대상

-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단,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이 지급되거나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근로자가 없는 경우

■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 신고기한: 폐업 또는 휴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신고장소: 각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고방법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지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①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1부
 - ② 휴업(폐업)사실증명원 사본 1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 이 경우, 탈퇴일은 원칙적으로 휴업(폐업)사실증명원상의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지만 휴·폐업일이 사실상의 휴·폐업일과 다른 경우 공단 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실상의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탈퇴처리 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는 취득 당시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이후 매년 1회씩 다시 결정하는데 이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년도에 그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해에 적용할 보험료를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소득월액은 당해 연도 7월부터 그 다음 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정기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당해 연도의 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준소득월액의 정기결정 대상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대상자는 전년도 12월 2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 및 사용자입니다. 전년도 12월 2일 이후 입사자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하지 않고, 취득 당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합니다.

■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 신고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매년 5월 중 공단에서 발송하는 “소득액 신고서”에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 및 근무기간을 기재하여 5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고대상

사업장이 소득세법 164조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 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단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한 후 사업장에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 사업장에서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공단에 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자·자료착오자 및 개인사업장 사용자 등은 공단의 안내에 따라 소득(총)액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장소 및 방법

소득액신고서에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기간을 기재·날인하여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전산매체에 의한 신고, EDI에 의한 신고 및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전화신고 불가)

- ① 전산매체에 의한 신고 : 공단에서 처리 가능한 사양으로 작성한 뒤 디스켓, CD 등 이동식 저장매체로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② EDI에 의한 신고 : EDI에 가입된 사업장은 EDI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③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 의한 신고 :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서 신고가능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총)액을 해당 사업장의 종사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 정기결정 소득의 적용기간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 신고대상 소득

신고대상 소득은 당해 사업장에서 전년도 근무기간 중 받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사업소득)금액으로,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현 사업장의 16번 급여합계액이며,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 명세서상 10번 소득금액입니다.

※ 2008.01.01부터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대상 소득은 당해 사업장에서 전년도 근무기간 중 받은 소득 중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Ⅰ 소득의 범위

1)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법상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 18조의 2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금액 포함)을 뺀 소득을 말합니다.

2)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경우

농업·임업·어업소득 및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 중간정산 퇴직금, 연봉제 시행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상당액은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는 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2008.1.1.부터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됨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 사업장가입자

01. 가입대상	02. 신고사항	03. 취득 및 상실신고
04.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05.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 가입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Ⅰ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다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음.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 대상.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포함.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대상임.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대학시간강사)
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중인 자는 가입대상임)

▶ 신고사항

사업장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장에 입사하거나 퇴직한 경우, 가입자의 성명 등이 변경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 및 상실 신고

Ⅰ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Ⅱ 신고기한: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 2월 중 입사한 때에는 3월 15일까지 신고

Ⅰ 신고장소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근로복지공단 지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하실 필요없이 한 기관에서 4대보험 공통신고서식으로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Ⅰ 신고방법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및 EDI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Ⅰ 신고서류

① 취득신고시 제출 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 특수직종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의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상실신고시 제출 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 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으로 신고하게 되면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하실 필요없이 하나의 신고서로 모두 처리 됩니다.

Ⅰ 취득 및 상실 시기

① 취득시기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때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때

② 상실시기

-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 사용관계가 종료(퇴직)된 때
- 60세에 도달한 때
-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때

Ⅰ 취득시 소득결정

연금보험료의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은 아래의 같은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 ① 소득이 월, 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정해지는 경우 :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 ② 일, 시간, 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 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을 받은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 ③ 앞의 ①, ②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은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으로

공단이 결정

I 가입기간 중 보험료의 납부

① 보험료의 납부기간 :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예1) 가입자가 4월 14일 입사 후 6월 22일 퇴사한 경우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5월분 및 상실월인 6월분 보험료 납부

예2) 지역가입자로 납부중인 자가 3월 1일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3월분부터 사업장에서 납부

예3) 지역가입자로 납부중인 자가 3월 2일~31일 사이에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3월분은 지역가입자 개인이 납부, 사업장에서는 4월분부터 납부

예4) 지역가입자로 납부예외 가입중인 자가 3월 5일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4월분부터 사업장에서 납부

② 같은 달에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지는 경우(동월 취득 상실자)

상실 후 같은 달에 취득하는 경우에 그 달의 보험료는 상실한 사업장 또는 상실한 가입종별에서 납부합니다.

> A 사업장에서 상실한 뒤 같은 달 B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상실월은 A 사업장에서 납부

예) A 사업장에 3월 8일 퇴사 후 B 사업장에 3월 20일 입사한 경우

→ 3월분 보험료는 A 사업장에서 납부하고, B 사업장은 4월분 보험료부터 납부

> A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 : 상실월은 A 사업장에서 납부

예) 7월 5일 A 사업장에 퇴사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경우

→ 7월분 보험료는 A 사업장에서 납부하고, 8월분 보험료부터는 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

> 다른 가입종별로 가입 중 A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다른 가입종별에서 납부

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납부하던 중 7월 10일 A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7월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이었던 가입종별에서 납부하므로 가입자가 납부하고, A 사업장은 8월분 보험료부터 납부

③ 초일자에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하는 경우

초일자에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예) A사업장에 1월 1일 취득하고 취득한 달인 1월 20일 상실하게 되는 경우

→ 1월분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음, 단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

Ⅰ 2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실제로 두 군데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 모두 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이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같이 둘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가입자는 종사하는 사업장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때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공단이 결정합니다.

① 각 사업장의 소득월액의 합이 최고 기준소득월액(37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② 각 사업장의 소득월액의 합이 최고 기준소득월액(3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조정 결정

Ⅰ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게 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4.5%를 원천공제한 뒤, 나머지 4.5%를 사용자가 보태어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여금",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 내역변경 및 정정 신고

Ⅰ 내역변경과 내역정정

"내용변경"은 이미 신고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바뀌어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예 : 재판을 통해 이름을 개명한 경우)을 말합니다. "내용정정"은 고의·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또는 처리된 사항을 옳게 정정하는 것(예 : 공단에 신고할 때 '홍길동'을 '홍기동'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을 말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올바른 사실 관계 발생일로 소급하여 정정하게 됩니다.

Ⅰ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Ⅰ 신고기한

-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Ⅰ 신고방법

내용변경 또는 내용정정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1부
- ② 가입자의 내용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변경(정정)항목별 입증서류 >

변경(정정)항목	입증(확인)서류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준소득월액(등급)	·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대장 사본 · 급여결정증비서(급여 미수령자에 한함)
취득일, 취득사유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취득(상실) 확인원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고지 산출 내역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통지원
상실일, 상실사유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 입증서류 · 미주허가 표시 여권 사본 또는 미주사실 입증서류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	· 광원: 임금대장 등 갭내근무 여부 입증서 · 부원: 선원수첩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납부예외(재개)일, 납부예외사유, 납부재개예정일	· 휴직복직관계 인사발령서 사본 · 입영통지서 또는 의사진단서 사본 · 기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Ⅰ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부예외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더라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Ⅰ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대상

① 납부예외 신청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휴직중인 경우 : 휴직기간 중 임금의 일부가 지급되는 경우에도 납부예외신청 대상에 포함
-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의무군인으로서 육·해·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원을 모두 말함
- 무보수 대표이사인 경우. 다만, 다른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적용됨

※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6.7. 부터는 사업장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역가입자로 적용됨.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의 납부예외는 2011.6.6. 이전까지만 허용하며, 2011.6.7. 이후에는 자격상실 대상임. (국민연금 제3조(정)의 개정)

<적용기준>

구분	2011.6.6.이전 (개정 전)	2011.6.7.이후 (개정 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좌동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 제외이나, 사용자에는 해당 되므로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고 납부예외 처리 ※ 단, 대표이사 1인 만 가입된 경 우에는 사업장 탈퇴처 리	근로자 및 사용자에서 제외이므로 사업장가입자에서 적용제외하고 지 역가입자로 적용

(예시) A사업장의 대표이사가 2011.5.1.로 무보수임을 사유로 납부예외 신청하는 경우 2011.6.6. 까지 납부예외 기간이며, 2011.6.7. 로 상실 대상임

• 무급 근로자인 경우 : 쟁의행위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임금체불에 의한 무급은 해당되지 않음)

② 납부재개 신고 대상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납부예외기간 중이라도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

■ 신청(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 신청(신고)기한: 해당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 신청(신고)장소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신고)방법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및 EDI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 포털서비스는 납부재개 신청만 가능하며, EDI는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단, 무급근로자 및 무보수대표이사의 경우 EDI를 통한 납부예외 신청은 불가함)

① 납부예외신청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1부
-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휴직발령서, 진단서 사본 등)

② 납부재개신고

-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1부

< 납부예외신청 사유별 입증서류 >

변경(정정)항목	입증서류
휴직	휴직발령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병역의무 수행	불필요
무보수 대표이사인 경우	정관 또는 주주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무급 근로자인 경우	무급근로 확인서, 노사합의서

■ 납부예외기간

납부예외기간 중 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 됩니다. 다만,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와 가입자가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

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면제 됩니다.

납부예외 사유별 인정되는 납부예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휴직 : 휴직 기간 동안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
- ② 병역의무 수행 : 병역의무 수행기간 동안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
- ③ 무보수 대표이사 : 납부예외기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인정
- ④ 무급 근로자 : 4개월 이내에서 인정

Ⅰ 납부예외기간 중 퇴사하거나 휴직기간이 연장된 경우

- 납부예외기간 중 퇴사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여 자격상실 처리하여야 합니다.
- 휴직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재개예정일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Ⅰ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추후납부제도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이는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 지역가입자

01. 가입대상	02. 신고사항	03. 취득 및 상실신고
04.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05.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06.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07. 농어업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Ⅰ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① 사업장가입자
- ②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 ③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 ④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중인 자는 가입대상임)
- ⑥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및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포함)
 - 다만, 퇴직일시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⑦ 별정우체국직원(별정우체국법 제29조)
- ⑧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⑨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가입대상임)
- ⑩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무소득배우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위 ③, ④, ⑤, ⑥, ⑦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⑪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에 한함)

▶ 신고사항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위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면 모두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므로, 자격의 취득, 상실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신고사항
직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가 퇴직한 경우	취득(소득)신고
18세 이상으로서 소득이 있게 된 경우	취득(소득)신고
납부예외신청 중 소득이 있게 된 경우	납부재개신고

➤ 취득 및 상실 신고

Ⅰ 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Ⅰ 신고기한: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Ⅰ 신고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Ⅰ 신고방법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전화(입증서류가 필요없는 경우에 한함),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에 의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Ⅰ 신고서류

- ① 취득신고시 제출 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② 상실신고시 제출 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
 -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③ 납부재개신고시 제출 서류
 -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1부

Ⅰ 취득 및 상실 시기

지역가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격 취득신고와 함께 취득 당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법 제12조제2항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며, 개인 의사에 따라 상실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하여 탈퇴할 수 없습니다.

① 취득시기

-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 18세 미만으로 소득이 있는 자가 18세 이상이 되는 때
- 27세 미만인 자가 27세 이상이 되는 때
-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별정우체국 직원, 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무소득 배우자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 기초수급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

- 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지급이 정지된 때
- 적용제외 처리되었던 해외거주자가 국내에 거주하게 된 때
- 1년 이상 행불사유로 자격상실된 자가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때 또는 자격취득신고한 때(소득신고)

② 상실시기

-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특수직종근로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 60세 미만자로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된 때
- 기초수급자에 해당된 때
-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별정우체국직원, 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게 된 때
- 60세에 도달한 때
- 특례적용 지역가입자의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 1년 이상 행방이 불명한 때

이때 사업장에서 자격취득신고하면 지역가입자 자격은 자동 상실되므로 별도의 자격상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밖의 사유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주로 전산으로 공적자료를 확인하여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괄 직권상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적자료의 확보가 지연되거나 확인이 안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상실신고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가까운 국민연금지사에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Ⅰ 취득시 소득결정

- ①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라 함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해 최저 23만원부터 최고 368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으로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말합니다.
※ 2008.01.01부터는 등급제 폐지
- ② 지역가입자는 취득(납부재개) 신고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신고권장소득월액 : 신고권장소득월액이라 함은 신고의무자가 소득신고를 하는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업종별 과세자료, 종사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면적 등을 기초로 하여 공단이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③ 소득신고시 본인의 소득에 맞게 신고를 하셔야 적정의 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되고, 나아가 연금을 받을 때에도 그에 따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당연가입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유발생일로 소급해서 직권으로 가입처리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 납부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 ④ 소득이 적다고 해서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과 탈퇴하는 것은 법률로써 정하고 있으므로 가입대상인 경우에는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제외 될 수 없습니다.
- ⑤ 소득이 없는 대상자 : 지역가입자는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등의 사유(예: 학생이지만 만27세가 되어 지역 가입자 가입 안내를 받은 경우 등)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입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하여 소득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란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연금보험료를 면제 받는 것을 말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가입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는 신청사항이므로 소득이 없더라도 원할 경우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예외 된 기간은 추후 납부를 통해 가입기간 산입이 가능합니다.

▶ 내역변경 및 정정 신고

Ⅰ 내역변경과 내역정정

“내용변경”은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어업인 및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등 이미 신고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바뀌어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예 : 재판을 통해 이름을 개명한 경우)을 말합니다.

“내용정정”은 고의·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또는 처리된 사항을 옳게 정정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올바른 사실 관계 발생일로 소급하여 정정하게 됩니다.

Ⅰ 신고의무자

가입자(이었던 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Ⅰ 신고기한

-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Ⅰ 신고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Ⅰ 신고방법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전화(입증서류가 필요없는 경우에 한함),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에 의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Ⅰ 신고서류

내용변경 또는 내용정정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부.
- ② 가입자의 내용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변경(정정) 사항		입증(확인) 서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경: 변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정정: 착오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월보험료(기준소득월액)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상항시 불필요)
자격취득	취득일	공단이 확인한 사유발생일과 다른 경우 :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 (해당기관 확인서 등)
자격상실	상실일	착오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 등
	상실사유	상실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납부예외	예외일	납부예외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외사유	선택적으로 징구
납부재개	재개예정일	납부예외신청시 증빙서류와 동일
	재개일	납부재개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특수직종 해당여부		광원 : 입금액당이 명시된 임금대장 사본 등 부원 : 선원수첩선원근로계약서승선증명서 등
농·어업인	비해당→해당	농어업인확인서 (이통장 및 읍면동장 확인) 또는 농지 원부
	해당→비해당	불필요
주소, 전화번호, 업종		불필요

※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주민등록제증명을 근거로 공단이 직접 처리하고 있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위와 같은 내용이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 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Ⅰ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부예외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재개”란 납부예외사유가 종료된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Ⅰ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대상

① 납부예외 신청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 사유	대상	확인방법(입증서류)
사업중단·실직·휴직중인 경우	종사직종에서 완전히 은퇴하여 현재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거나, 직장퇴사·사업장 부도·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그밖에도 학교졸업 또는 군제대후 취업 준비중에 있는 자 등	실업급여 수령, 퇴직증명, 휴폐업사실 등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무군인으로서 육해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 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원을 모두 말함.	별도 입증자료 필요없음
학생	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사회통념상 진학 또는 취학을 위하여 공부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학원생, 수험준비생 등 학생에 준하는 자도 포함.	재학증명서, 학생증(수강증)
재소자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	재소 확인서 등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자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수용 확인서 등
행불자	행불자란 주민등록법상 종래의 주소지를 떠난 자로서 거처가 불명하여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사실상 거주하지 않거나 거처가 불명한 자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이를 근거로 납부예외 함. ※ 2008.01.01부터는 1년이상 행불자는 적용제외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등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자 · 농어업재해대책법·자연재해대책법·재해구호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된 자 · 재해·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진단서, 의료기관 확인서 등
장기간 해외체류자로서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자	· 국내에 소득원이 있는 경우 제외 · 국내에 소득원이 없고, 귀국예정인 경우에는 자격 상실 신고 가능	여권사본(출국여부 확인 가능할 것) 등
성직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등 종교와 관련하여 성직자 신분을 가지고 성직활동은 하고 있으면서 별도의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	소속 종교단체(교회, 사찰 등)의 확인서 등
장애인, 행위무능력자	장애인수첩소지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	장애인수첩, 법원 판결문사본, 동사무소 관련대장, 연금수급증서 등

② 납부재개 신고 대상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납부예외기간 중이라도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

Ⅰ 신청(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Ⅰ 신청(신고)기한

납부예외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신청시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하되, 최종 납부월의 다음달 초일부터 납부예외로 결정됩니다.

Ⅰ 신청(신고)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Ⅰ 신청(신고)방법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입증서류가 필요없는 경우에 한함), 우편이나 팩스로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① 납부예외신청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1부
 -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납부예외 신청 대상" 참고)
- ② 납부재개신고
 -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 1부

Ⅰ 납부예외기간

납부예외 기간은 그 사유의 발생기간 동안으로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와 가입자가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면제됩니다.

납부예외사유별 인정되는 납부예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휴직 : 휴직 기간 동안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
- ② 병역의무 수행 : 병역의무 수행기간 동안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
- ③ 재소자 : 교도소 수용 기간

이밖에도 납부예외기간을 명백하게 확인(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그 사유의 종료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Ⅰ 납부예외 사유 종료

납부예외 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종료되었거나 소득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납부재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재취업을 하거나 소득활동을 하게되면 납부재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납부재개나 납부예외를 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납부재개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다만,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와 가입자가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당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 보험료를 재결정하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험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Ⅰ 납부재개 신고 및 납부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예외자는 소득이 있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급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Ⅰ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추후납부제도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이는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는 달리 정기적인 소득신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 결정은 공단에서 사전에 가입자의 종사업종 변경여부 및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적정성 여부를 과세자료 등에 의거 조사, 확인한 후 결정합니다.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변경된 소득의 신고를 통지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변경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입자(대리인)가 신고한 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되며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공단의 통지 및 결정이 없더라도, 가입자의 종사업종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또는 그 가족)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와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이 기재된 서류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제외) 등을 제출하시면 되며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며,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신고한 소득월액은 소급해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Ⅰ 국고보조

농어업인 국고보조는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9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체로 신고소득이 낮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어촌특별세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Ⅰ 지원대상

- ① 농어업인인 지역가입자
- ②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에서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
- ③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후에 농어업인이 된 자

단,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 지역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장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가 60세 도달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후에 농어업에 종사하게 된다 하더라도 국고보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자

- 농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금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 농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 2009년 평균소득월액 금 1,799,574원)
- 농수산물류의 유통, 가공 및 판매에만 종사하는 자
- 농지나 선박 등을 소유만하고, 경영이나 경작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자(부재지주 등). 단, 농지나 선박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의 지급을 약정하고 농어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외.

Ⅰ 신청(신고)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Ⅰ 신청(신고)기한

농어업인 확인서를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업·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이장이나 통장을 거쳐 해당 시장·구청장·읍장이나 면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공단에 제출할 때부터 인정합니다. 다만, 그 이전부터 농어업에 종사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신청일 직전 6개월 내에서 소급적용됩니다.

- 자격취득 신고시 : 지역가입자 취득 신고를 할 때, 취득신고서에 농어업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내용변동 신고시 :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중에 농어업인이 된 때, 내용변경 신고서에 농어업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Ⅰ 신청(신고)장소

본인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Ⅰ 신청(신고)방법

- 1차 확인 : 거주지 또는 농·어·임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지역의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고,
- 2차 확인 : 거주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청장 또는 읍·면장 확인을 받아 제출 하시면 됩니다.

※ 농어업인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서류

-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로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어업권을 등록한 자,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

관련조항	구비서류
8조(면허어업)	어업면허증
17조(어업권의 등록)	어업권관리대장
41조(허가어업)	어업허가증,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증, 종묘생산어업 허가증
47조(신고어업)	어업신고증명서

Ⅰ 지원금액

2010년 현재 국고보조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790,000원(보험료 71,100원) 이하의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 791,000원 이상의 경우 79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35,550원)을 정액 지원받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기준소득 월액	23만원	23만원	24만원	25만원	26만원	27만원	29만원	31만원
지원액	10,350	10,350	10,800	11,250	11,700	12,150	13,050	13,950
기준소득 월액	34만원	37만원	40만원	44만원	48만원	52만원	79만원 이상	
지원액	15,300	16,650	18,000	19,800	21,600	23,400	35,550	

국고지원 기준은 1995년 7월 최초 지원시에는 최저등급보험료의 1/3 금액이 지원되었으나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액을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매년 초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됩니다.

I 지원중단

농어업인으로 국고보조를 받다가 시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농어업인 국고보조가 중단됩니다. 단, 도시지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농업에 종사하신다면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농업에 종사하던 가입자가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자내용 변경신고서에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밖에도 자연 및 허위 신고한 경우, 지원받는 기간중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이미 지원된 연금보험료가 환수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자

01. 가입신청 대상

02. 가입청 및 탈퇴/상실

03.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입신청 대상

임의가입은 국내에 거주하고 18세이상 60세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무가입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지급이 정지중인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지급이 정지중인 자를 제외)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Ⅰ 신청자

본인(대리인)

Ⅰ 신청기한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 신청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지역 제한 없음)

■ 신청방법

임의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 임의가입·탈퇴 신청서(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임의가입자의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 취득 및 상실 시기

- ① 취득시기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 ② 상실시기
 - 사망한 때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 60세에 달한 때
 - 3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때
 -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① 임의가입자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다만, 2010.6.30이전에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하였으나,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7.1부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97. 4.	‘98. 4.	‘99. 4.	‘00. 4.	‘01. 4.	‘02. 4.	‘03. 4.
92만원	99만원	106만원	99만원	99만원	99만원	106만원

‘04. 4.	‘05. 4.	‘06. 4.	‘07. 4.	‘08. 4.	‘09. 4.	‘2010. 4.	‘2010. 7.
106만원	113만원	121만원	121만원	129만원	138만원	140만원	99만원

②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중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임의가입신청 직전에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가입기간 중 정기결정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기초수급자의 소득중 전년도에 최종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는 기초 수급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 내역변경 및 정정신고

Ⅰ 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Ⅰ 신고기한

-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Ⅰ 신고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지역 제한 없음)

Ⅰ 신고서류

-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부
- 가입자의 내역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내용변경/정정 사항 및 증빙서류 >

내용변경/정정 사항	입증서류
성명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등 입증서류
국민연금 가입사업장 종사 여부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지역(또는 기타)→사업장 -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사업장→지역(또는 기타) - 퇴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농어업인 해당 여부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농어업인 확인서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	임금대장 및 선원수첩 등 기타 입증서류
취득일, 상실일	재직증명서, 여권사본 등 입증서류
기준소득월액 (등급)	임금대장사본 등 입증서류
직종,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입증서류 불필요

○ 임의계속가입자

01. 가입신청 대상

02. 가입청 및 탈퇴/상실

03.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 ②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 ③ 기타임의계속가입자 :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 대상

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0세가 되거나 임의계속 탈퇴(상실)하고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 전액미납, 전액 납부예외자(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중인 자

▶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Ⅰ 신청자

본인(대리인)

Ⅰ 신청기한

65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 신청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지역 제한 없음)

■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 임의계속 가입·탈퇴 신청서(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임의가입자의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 취득 및 상실 시기

- ① 취득시기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 ② 상실시기
 - 사망한 때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 3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소득의 범위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합니다. 즉, 연금보험료의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은 아래의 같은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 소득이 월, 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정해지는 경우 :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 일, 시간, 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 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을 받은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 앞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 간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은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으로 공단이 결정

다만, 2010.7.1부터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도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근로소득 기준보다 더 많은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시행하고 있습니다.

②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소득의 범위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합니다. 즉, 취득 신고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가입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결정 : 자격취득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결정 : 신고권장소득월액이라 함은 신고의무자가 소득신고를 하는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업종별 과세자료, 종사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면적 등을 기초로 하여 공단이 산정한 보험료 금액을 말합니다. 가입자의 신고 소득이 실제 소득과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신고를 미루는 경우에는 공단이 신고권장소득월액을 바탕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③ 기타임의계속가입자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다만, 2010.6.30 이전에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하였으나,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7.1 부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97. 4.	‘98. 4.	‘99. 4.	‘00. 4.	‘01. 4.	‘02. 4.	‘03. 4.
92만원	99만원	106만원	99만원	99만원	99만원	106만원

‘04. 4.	‘05. 4.	‘06. 4.	‘07. 4.	‘08. 4.	‘09. 4.	‘2010. 4.	‘2010. 7.
106만원	113만원	121만원	121만원	129만원	138만원	140만원	99만원

④ 기초수급자인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중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임의(계속)가입신청 직전에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가입기간 중 정기결정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기초수급자의 소득중 전년도에 최종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는 기초 수급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 내역변경 및 정정신고

Ⅰ 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Ⅰ 신고기한

-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Ⅰ 신고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지역 제한 없음)

I 신고서류

-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부
- 가입자의 내역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내용변경/정정 사항 및 증빙서류 >

내용변경/정정 사항	입증서류
성명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등 입증서류
국민연금 가입사업장 종사 여부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지역(또는 기타)→사업장 -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사업장→지역(또는 기타) - 퇴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농어업인 해당 여부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농어업인 확인서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	임금대장 및 전원수첩 등 기타 입증서류
취득일, 상실일	재직증명서, 여권사본 등 입증서류
기준소득월액 (등급)	임금대장사본 등 입증서류
직종,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입증서류 불필요

○ 외국인가입자

01. 가입대상	02. 신고사항	03. 취득 및 상실신고
04. 외국인가입자에 대한 연금급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가입대상

- ①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 ② 외국인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가입대상 제외자

- ① 연수생(연수취업은 가입대상),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 ②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
: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로서 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 ③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 가입대상 여부 확인

- ① 국가별 가입대상 여부 
- ② 체류자격별 가입대상 여부 

▶ 신고사항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대부분의 업무처리는 내국인 가입자 관리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취득 및 상실 신고

Ⅰ 신고의무자

-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의 사용자
- 외국인 지역가입자 :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Ⅰ 신고기한

-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 2월 중 입사한 때에는 3. 15일까지 신고
- 외국인 지역가입자 : 자격취득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외국인가입자에 대한 연금급여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가입자에게는 본국 귀환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의 경우 2007년 5월 11일부터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상호주의란?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권 취득, 급여지급 등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Ⅰ 반환일시금 지급

- ①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③ 최소가입기간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본국에 귀환하는 경우(이미 본국으로 귀환한 외국인도 포함)

<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 (2010.11.1. 기준)>

반환 일시 금지 금	국적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협정(13개국)		독일, 미국, 캐나다,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최소 가입 기간	6개월이상	벨리즈
		1년이상(10개국)	그레나다,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요르단, 잠바브웨, 카메룬, 콩고, 태국, 토고, 부탄
		2년이상	베네수엘라
	없음(19개국)		가나, 말레이시아, 바누아투, 버뮤다, 수단, 스리랑카, 스위스, 엘살바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케냐, 콜롬비아, 터키, 튀니지, 트리니다드바고, 필리핀, 홍콩

※ 청구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금·종류 및 청구의 [외국인에 대한 연금급여](#) 참조

○ 연금보험료

01. 특징	02.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03. 보험료 납부기한	04. 보험료 납부기간
05.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06. 연금보험에 대한 소득공제		

○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 2011년 1월 1일 시행

•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란

3개의 사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 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납한 국민연금보험료는 현재와 같이 연금수급자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으로 적립되어 별도로 운용됩니다.

•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는

• 보험료 고지

사업장, 지역가입자에게 각각의 고지서를 한 봉투에 담아 한 번에 발송

• 보험료 납부

무고지서 수납, 편의점 납부, 통합징수 포털사이트 납부 등 납부방법 다양화 * 보험료는 현재처럼 따로따로 납부하실 수도 있고, 한 번에 납부도 가능함

• 보험료 체납

4대 사회보험료 체납시 민원을 한 번에 처리

❗ **보험료 납부 등에 대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특징

연금보험료는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 됩니다.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연체금(연금보험료의 3~9%)이 가산되며, 또한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로 충당하게 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이 세금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금은 국가의 운영경비로 사용되는데 비하여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높은 수익률을 더해 나중에 본인에게 지급이 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납부되는 것으로 세금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text{연금보험료} = \text{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times \text{연금보험료율}$$

Ⅰ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23만원에서 최고금액은 375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3만원보다 적으면 2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75만원보다 많으면 375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은

- ①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시 기준소득월액은 - 사업장가입자 : 당해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서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
- ②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은 - 전년도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되 전년도의 소득을 당해년도 7월부터 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

Ⅰ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게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제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기준소득월액이 1,060,000원인 봉급자의 경우 매월 95,4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그 중 47,700원은 본인이, 47,7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퇴직금전환금이란?

퇴직금전환금 제도는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준비금을 연금보험료로 전환하는 제도로 1993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전체 연금보험료의 1/3(3%)을 충당하였으나 법개정으로 1999년 4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연금보험료로 납부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가입자가 퇴직 시에는 전체 퇴직금 중에서 퇴직금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러한 퇴직금전환금은 연금기금에 편입되어 연금지급준비금으로 활용되므로 이를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제도시행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 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 국고지원 자세히 보기](#)

▶ 보험료 납부기한

Ⅰ 납부기한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10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기한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I 납부기한연장신청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거나 자동이체자(예금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료가 이체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월의 다음달 연금보험료 납부기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신청하시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납부기간

가입자(사용자)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같은 달에 취득일과 상실일이 속한 경우 최초 상실일이 속한 사업장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그 달의 고지서에는 그 달 15일까지 신고된 취득/상실자만 반영하므로 16일~말일 사이의 변동자는 다음달 고지시 반영됩니다.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95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보조 해주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란?

어떤 기관이나 단체, 기업, 개인에 대하여 국고에서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농어촌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의 농어촌특별세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 매월 보험료의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I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농어업인인 지역가입자 또는 농어업인으로서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경우에 한하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재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I 지원금액

2011년 현재 국고보조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790,000원(보험료 71,100원) 이하의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 791,000원 이상의 경우 79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35,500원)을 정액 지원받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 기준소득금액별 국고보조금 지원액 > (단위 : 원)

기준소득 월액	23만원	24만원	25만원	26만원	27만원	28만원	29만원	31만원
지원액	10,350	10,350	10,800	11,250	11,700	12,150	13,050	13,950
기준소득 월액	34만원	37만원	40만원	44만원	48만원	52만원	79만원 이상	
지원액	15,300	16,650	18,000	19,800	21,600	23,400	35,550	

국고지원 기준은 1995년 7월 최초 지원시에는 최저등급보험료의 1/3 금액이 지원되었으나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액을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매년 초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게 됩니다.

❶ 지원중단

농어업인으로 국고보조를 받다가 시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농어업인 국고보조가 중단됩니다. 단, 도시지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농업에 종사하신다면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농어업에 종사하던 가입자가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자내용 변경신고서에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밖에도 자연 및 허위 신고한 경우, 지원받는 기간중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이미 지원된 연금보험료가 환수되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1조의3 및 동법 부칙(2000.12.29) 제9조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에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가입자(상실자 포함)로서 종합소득이 있는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2006년도부터 추납보험료 포함)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부담한 부분(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절반), 연체금, 자동이체 및 이메일고지 감액금액, 반납금은 제외됩니다.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의 납부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하므로 별도의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추납보험료 및 반납금 납부방법

< 추납보험료 및 반납금 납부방법 >

구분		이용방법등	안내사항	비고
고지서로 창구 납부		▪ 납부장소 은행,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회사 등 일부은행 불가), 산림조합중앙회 ▪ 2D코드 납부 고지서에 인쇄된 2D코드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우리은행, 웹이리마트에서 24시간 납부 가능		
가상계좌 번호 납부		가상계좌번호 발급 및 조회: 지사 , 국번없이 1355로 신청 수납전용계좌: 매월고지서에 인쇄 은행창구, 자동화기기,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해당 계좌번호로 입금 처리	▪ 수납전용계좌: 고지서에 인쇄된 대로 납부 및 희망하는 월을 선택 하여 납부 가능 ▪ 이용매체에 따라 최대 23:00까지 납부 가능	
CD/ ATM 납부		▪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납부 ▪ 현금(직불)카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 예금통장 사용가능	▪ 이용시간 ▪ 연중무휴 이용 가능 ▪ 07:00 ~ 22:00(은행별로 상이)	
인터넷 납부	인터넷 지로	인터넷 지로 사이트 (www.giro.or.kr)에 접속하여 신청 하고 보험료 납부	▪ 이용시간 : ▪ 연중 365일 이용 가능 ▪ 07:00~22:00(인터넷 뱅킹은 은행 별로 상이) ※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납부 가능	
	인터넷 뱅킹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회원가입 후 사이트에서 보험료 납부 ▪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전 금융기관 이용 가능		
신용카드 납부		▪ 이용가능카드 : BC, 국민, 외환, 삼성카드, 신한카드(구LG포함), 롯데, 현대, 전북은행카드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 추후납부

추납보험료란 군입대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이로 인해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Ⅰ 신청대상

납부예외기간 및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로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Ⅰ 신청기한: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

자격상실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합니다.

Ⅰ 납부방법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전가입기간과 분할납부횟수 종전가입기간 분할납부횟수

추납대상기간	분할납부횟수
1년미만	3회
1년이상 5년미만	12회
5년이상	24회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Ⅰ 납부기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Ⅰ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반환일시금 반납

▶ 반환일시금 반납

반환일시금 반납금이란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이며, 이로 인해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Ⅰ 신청대상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중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의 신청
(납부예외자를 포함하고, 60세 이후도 가입중이면 가능하며 상실일 신청일이 같은 날이어도 가능)

Ⅰ 신청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 반납 신청 및 납부가능
- 자격상실시 반납신청은 불가하고, 신청 후 상실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 가능(사망 등은 제외)

Ⅰ 납부방법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전가입기간	분할반납횟수
1년미만	3회
1년이상 5년미만	12회
5년이상	24회

Ⅰ 납부기한

반납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Ⅰ 반납금 산정기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당해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연금급여

01. 급여의 특징	02. 급여의 종류	03. 급여액 산정	04. 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일
05. 급여의 선택	06. 급여의 청구	07. 청구서 처리절차 및 장애·유족심사 절차	

▶ 급여의 특징

Ⅰ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법 제51조제2항)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Ⅰ 소득보장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퇴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성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입니다.

Ⅰ 가입기간 인정(크레딧)제도 운영 (법 제18조 및 제19조)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 출산 크레딧(2008.1.1.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인정)

2자녀 이상 출산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평균소득월액(A값)의 전액을 인정함. **출산**

자녀수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이상
추가 인정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 군복무 크레딧(2008.1.1. 이후 군에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평균소득월액(A값)의 1/2을 인정함.

Ⅰ 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 (법 제58조)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금을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2011.7.6. 시행)

▶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

일시금이 있습니다.

연금 급여 (매월 지급)		일시금 급여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반환 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사망 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보조적·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 급여액 산정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연금종별 지급률 및 제한율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
$$\frac{2.4(A+0.75B) \times P1/P}{1988-1998\text{년}} + \frac{1.8(A+B) \times P2/P}{1999-2007\text{년}} + \frac{1.5(A+B) \times P3/P}{2008\text{년}} + \frac{1.485(A+B) \times P4/P}{2009\text{년}}$$
$$+ \frac{1.2(A+B) \times P23/P + X(A+A) \times C/P + X(A+1/2A) \times 6/P}{2028\text{년 이후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times (1 + 0.05n/12)$$

- A =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전년도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그 합계액을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로 나누어 산정
- P =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 (노령연금액 산정시에만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을 포함한 전체 가입월수)

구분	1988-1998년	1999-2007년	2008-2027년	2028년 이후
상수	2.4	1.8	1.5(매년 0.015씩 감소)	1.2
소득대체율	70%	60%	50%(매년 0.5%p씩 감소)	40%
가입월수	P1	P2	P3 ... P22	P23

- n = 20년 초과월수(노령연금액 산정시에만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을 포함한 전체 가입월수)
- X : 1.5 ~ 1.2까지의 비례상수 중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시점의 상수
- C : 추가가입기간 12, 30, 48, 50 (균분하는 경우에는 6, 15, 24, 25)
(출산 및 군복무크레딧으로 인한 연금액 및 증가되는 가입기간은 노령연금액 산정시에만 적용됨)

※ 연금지급사유발생 기간별 적용할 A값

지급사유 발생 연월	1990. 2월 ~ 이전	1990. 3월 ~ 1991. 2월	1991. 3월 ~ 1992. 2월	1992. 3월 ~ 1993. 2월	1993. 3월 ~ 1994. 2월	1994. 3월 ~ 1995. 2월	1995. 3월 ~ 1996. 2월
A값	374, 485	423, 569	486, 449	581, 837	670, 540	757, 338	859, 838

지급사유 발생 연월	1996. 3월 ~ 1997. 2월	1997. 3월 ~ 1998. 2월	1998. 3월 ~ 1999. 2월	1999. 3월 ~ 2000. 2월	2000. 3월 ~ 2001. 2월	2001. 3월 ~ 2002. 2월	2002. 3월 ~ 2003. 2월
A값	931, 293	1, 015, 544	1, 123, 185	1, 260, 611	1, 290, 803	1, 271, 595	1, 294, 723

지급사유 발생 연월	2003. 3월 ~ 2004. 2월	2004. 3월 ~ 2005. 2월	2005. 3월 ~ 2006. 2월	2006. 3월 ~ 2007. 2월	2007. 3월 ~ 2008. 2월	2008. 3월 ~ 2009. 2월	2009. 3월 ~ 2010. 2월
A값	1, 320, 105	1, 412, 428	1, 497, 798	1, 566, 567	1, 618, 914	1, 676, 837	1, 750, 959

지급사유 발생 연월	2010. 3월 ~ 2011. 2월	2011. 3월 ~ 2012. 2월	2012. 3월 ~ 2013. 2월				
A값	1, 791, 955	1, 824, 109	1, 891, 771				

※ 2011. 03. 01. 이후 수급사유 발생자에게 적용할 연도별 재평가율

재평가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재평가율	5.051	4.466	3.888	3.251	2.821	2.497	2.200	2.031	1.862	1.684	1.500	1.465	1.487

재평가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재평가율	1.461	1.433	1.339	1.263	1.207	1.168	1.128	1.080	1.055	1.037	1.000		

Ⅰ 부양가족연금액 (법 제52조)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입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새로이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됩니다.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범위 및 부양가족연금액(2012년 4월~2013년 3월 적용)

- 배우자 : 연 236,360원
-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 연 157,540원(1인당)
-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부모 : 연 157,540원(1인당)

▶ 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일

Ⅰ 지급기간 (법 제54조)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사유 발생일은 60세 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입니다.

Ⅰ 지급일

정기지급	매월 정기지급되는 연금은 노령, 분할, 장애, 유족연금이며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합니다(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예) 2010. 10월분 연금 → 2010. 10. 29. 지급(10월 30일 토요일, 10월 31일 일요일) 2010. 11월분 연금 → 2010. 11. 30. 지급
즉시지급	반환(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의 경우에는 수급요건이 확인되고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진 경우 청구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Ⅰ 지급방법

수급권자가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급여의 선택 - 둘 이상 급여가 발생한 경우

일본, 영국, 미국, 덴마크 등과 같이 우리나라 보다 앞서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또는 다른 사회보험에 의한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에게 급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중복급여의 조정이란?

중복급여의 조정은 동일인에게 2이상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1개의 급여만 지급되고, 나머지 급여는 지급정지되는 등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Ⅰ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56조)

한사람에게 둘 이상의 국민연금 급여가 발생한 경우 선택한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노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그 두개의 연금급여 중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나의 급여가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완화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의한 2이상의 급여가 발생한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인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함.

- 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경우 선택한 급여와 유족연금의 20% 지급(단,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 유족연금의 20%를 지급하지 아니함)
- ②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 선택한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반환일시금은 '사망일시금 상당액'을 지급(단, 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경우 장애연금만 지급함)

Ⅰ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113조)

다른 법률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이 조정(1/2)되거나 일정기간 지급이 정지됩니다.

- ① 제3자의 가해행위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수령한 경우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 ②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장애 또는 유족보상을 받게되는 경우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해당 연금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선원법, 어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에 의해 장애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장애 또는 유족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급여의 청구

Ⅰ 청구인 (법 제50조)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 예외

-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가 가능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가 가능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Ⅰ 청구기한 (법 제115조)

급여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노령, 장애, 유족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은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연금산정시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드립니다.

Ⅰ 청구장소

수급권자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Ⅰ 급여청구의 방법

현재 급여청구는 크게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나뉘볼 수 있으며,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일정 범위내에서 전화·팩스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I 청구방법에 따른 공통 구비서류

청구방법	구비서류
수급권자 내방청구	○ 급여지급청구서 ○ 수급권자 신분증 ○ 수급권자 예금계좌
사자 (使者) 청구	○ 급여지급청구서(수급권자 본인의 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수급권자 본인여부 및 청구의사 확인되어야 하므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수급권자 예금계좌 ○ 사자(使者) 신분증
대리청구	1. 해외체류·군복무·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대리청구사항'란에 기재후 수급권자 날인) ※ 급여지급청구서상의 '대리청구사항'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대리관계에 대한 수급권자의 자필위임장이 있는 경우 인정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사본(출입국 사실증명서), 복무확인서, 수용증명서 등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또는 수급권자 예금계좌 ※ 수급권자의 자필위임장과 해당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대리인 계좌 지급 가능
	2. 해외체류사유로 인한 일정한 범위의 친족이 청구하는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 ○ 수급권자 여권 사본 ○ 대리관계에 대한 수급자의 자필위임장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또는 수급권자 예금계좌 ☞ 친족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청구방법	구비서류	
대리청구		3. 외국인이 본국에서 국내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는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 ○ 급여지급청구서상 '대리청구 사항'란 기재 후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을 필요로 하고,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대리청구사항'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대리관계에 대한 수급권자의 위임장에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 인정 ○ 수급권자 본인 신분증 사본(여권, 사회보장카드, 기타 신분증 사본 등 외국인 본국 발행 공적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수급권자 예금계좌(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 필할 것) ※ 외국인 본국의 행정관청이 수급권자 본인이 급여지급청구서('대리청구 사항'란 기재) 또는 위임장을 작성하였음을 증명하고 이를 주한 외국대사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청구서(위임장) 및 수급권자 본인계좌 확인 서류에 공증 및 영사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됨
우편청구	수급권자 본인 청구	1. 일반적인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수급권자 본인의 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수급권자 본인 여부 및 청구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수급권자 예금계좌 2. 외국인이 청구하는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우리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확인을 필요로 하여야 함) ○ 수급권자 여권 사본 ○ 수급권자 예금계좌
	대리 청구	○ 대리청구시 구비서류 ○ 청구서의 '청구인란'에 대리인 날인

※ 해외송금을 원할 경우 추가서류

- 해외송금신청서
- 통장 또는 거래내역서등 기타 본인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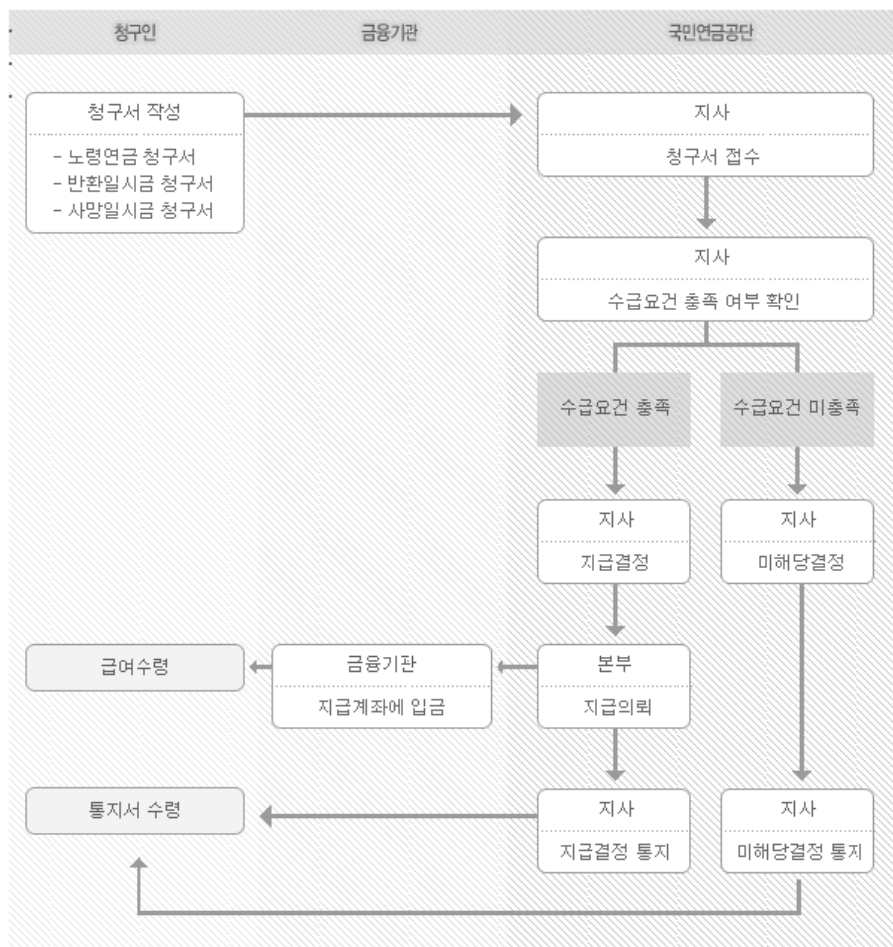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국내에서의 번역공증(한국어 번역) 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2 급여지급청구서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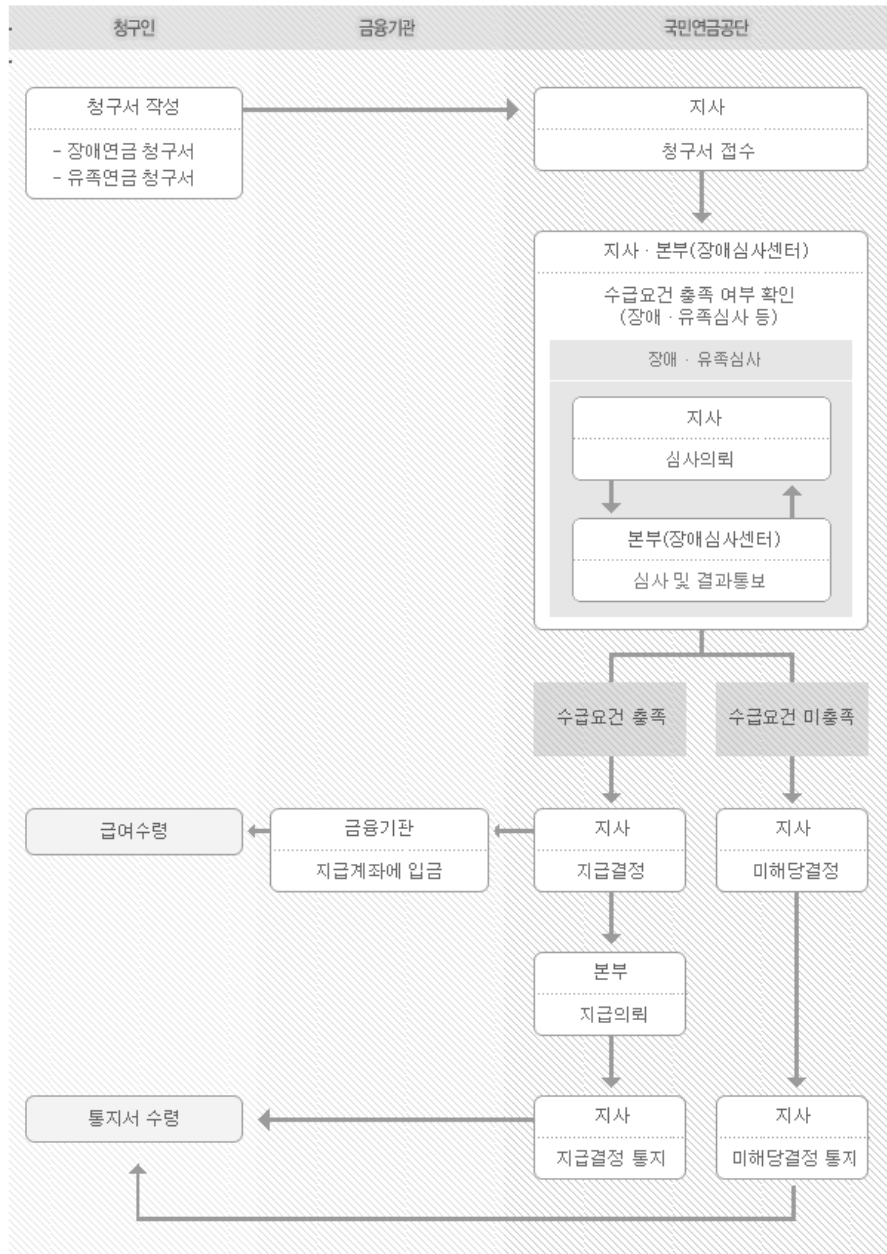
청구인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의 해당 급여청구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공단 지사에서는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을 하여 급여(연금, 일시금)를 지급하며,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권 미해당결정을 하게 됩니다.

접수된 청구서에 대한 지급결정 또는 미해당결정 통지는 급여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다만, 수급권 취득일이 속한 달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 이내)에 하게 되며 수급요건 추가 확인 등으로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처리지연사항을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의학적인 심사절차가 필요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3주(21일)의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 노령연금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청구서 >



< 장애연금 · 유족연금 청구서 >



▶ 장애 유족연금 심사 절차

Ⅰ 장애·유족연금 심사 절차

급여지급청구서 처리절차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장애·유족 심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유족연금은 일반적으로는 유족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심사를 거쳐서 지급결정하게 됩니다.

- 즉,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가입중인 사람)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중에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며,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사

람)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생긴 질병으로 가입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Ⅰ 심사 소요기간 및 심사부서

장애·유족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공휴일 제외되며, 자료를 보완하거나 직접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 있을 수 있음) 이내에 하게 되며, 공단지사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청구서가 접수되면 이를 장애심사센터로 심사의뢰를 하고 장애심사센터에서는 의학적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 때, 장애연금의 경우 절단장애와 같은 비교적 정형화되고 단순한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심사센터로 의뢰하지 않고 지사에서 직접 자문의사의 자문을 거쳐 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지급하게 되므로, 장애심사는 이러한 질병이나 부상의 가입중 발생여부, 장애등급 등을 심사하는 절차가 됩니다.

○ 노령연금

01. 노령연금의 종류

02.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03. 청구방법

04.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 노령연금의 종류

Ⅰ 완전노령연금 (법 제61조)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에(65세 이전까지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65세 이전까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자노령연금에 해당)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Ⅱ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달하여 소득있는 업무(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이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Ⅲ 재직자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소득있는 업무(연간 총소득을 근로소득 공제 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소득활동에 종사함으로써 가족부양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양가족연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원래 연금은 고령, 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가입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액을 줄여 지급하도록 재직자노령연금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재직자노령연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완전노령연금이나 감액노령연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Ⅳ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단, 5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60세 이후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재직자 노령연금 지급

소득이 있는 업무(시행령 제45조)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2012년의 경우 월 1,891,771)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I 분할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 ① 이혼
- ② 배우자 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 ③ 본인의 60세 도달

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됩니다.

특례노령연금

국민연금제도를 확대 시행할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급여제도로써 5년(60개월)만 가입해도 60세가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대부분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많지 않음을 고려하여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유무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완전 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이상, 60세에 도달한 자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기본연금액(100%) + 부양가족연금액
감액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자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가입기간 10년의 경우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년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재직자 노령연금	완전노령연금수급권자 또는 감액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완전노령이나 감액노령연금으로 전환)	가입기간 10년, 60세인 경우 · 기본연금액의 50% × 50% · 가입기간 1년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연령별 지급율을 10%를 증액 (연령별 지급율 : 60세 50%, 61세 60%, 62세 70%, 63세 80%, 64세 90%, 65세 이후 100%)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전에 청구한 경우 (65세 이전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재직자 노령연금 지급)	가입기간 10년, 55세인 경우 · 기본연금액의 50% × 7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년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 수급개시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연령별 지급율 6%를 증액 (연령별 지급율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Ⅰ 노령연금 수급연령 (법 부칙 제8조)

현재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0세이나, 그 지급연령이 높아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② 청구방법

Ⅰ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Ⅰ 청구기한

노령연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07.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13.5.1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08.5월~2013.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13.6월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Ⅰ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Ⅰ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청구안내 대상자만 가능) ☞바로가기

※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

Ⅰ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배우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자녀, 부모 또는 배우자 또는 부모·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 • 도장(서명가능)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가 달리된 경우 : 생계유지확인서 또는 비통거사유 확인자료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장애2급 이상인 경우 : 장애인단서 또는 장애인 수첩 1부

주)

▶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단위 : 원/월)

순번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평균액(B값)	연금보험료(9%)	가입기간						
			10년 (50%)	15년 (75%)	20년 (100%)	25년 (100%)	30년 (100%)	35년 (100%)	40년 (100%)
1	240,000	21,600	121,910	177,860	231,29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2	250,000	22,500	122,480	178,700	232,38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3	260,000	23,400	123,050	179,530	233,460	260,000	260,000	260,000	260,000
4	270,000	24,300	123,620	180,370	234,55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5	290,000	26,100	124,770	182,040	236,720	290,000	290,000	290,000	290,000
6	310,000	27,900	125,910	183,710	238,890	293,930	310,000	310,000	310,000
7	340,000	30,600	127,620	186,210	242,140	297,940	340,000	340,000	340,000
8	370,000	33,300	129,340	188,710	245,400	301,940	358,490	370,000	370,000
9	400,000	36,000	131,060	191,210	248,650	305,950	363,240	400,000	400,000
10	440,000	39,600	133,340	194,550	252,990	311,290	369,580	427,870	440,000
11	480,000	43,200	135,630	197,890	257,330	316,630	375,920	435,210	480,000
12	520,000	46,800	137,920	201,230	261,670	321,970	382,260	442,550	502,850
13	570,000	51,300	140,780	205,400	267,100	328,640	390,190	451,730	513,270
14	620,000	55,800	143,640	209,570	272,520	335,320	398,110	460,900	523,700
15	670,000	60,300	146,500	213,740	277,950	341,990	406,040	470,080	534,120
16	730,000	65,700	149,930	218,750	284,460	350,000	415,550	481,090	546,630
17	790,000	71,100	153,360	223,760	290,970	358,010	425,060	492,100	559,140
18	850,000	76,500	156,790	228,760	297,480	366,020	434,570	503,110	571,650
19	920,000	82,800	160,790	234,600	305,070	375,370	445,660	515,950	586,250
20	990,000	89,100	164,800	240,440	312,670	384,710	456,760	528,800	600,840
21	1,060,000	95,400	168,800	246,280	320,260	394,060	467,850	541,640	615,440
22	1,130,000	101,700	172,800	252,120	327,860	403,400	478,950	554,490	630,030
23	1,210,000	108,900	177,380	258,800	336,540	414,080	491,630	569,170	646,710
24	1,290,000	116,100	181,950	265,470	345,220	424,760	504,310	583,850	663,390
25	1,380,000	124,200	187,100	272,980	354,980	436,780	518,570	600,360	682,160
26	1,470,000	132,300	192,250	280,490	364,750	448,790	532,840	616,880	700,920
27	1,560,000	140,400	197,390	288,000	374,510	460,810	547,100	633,390	719,690
28	1,660,000	149,400	203,110	296,350	385,360	474,160	562,950	651,740	740,540
29	1,760,000	158,400	208,830	304,690	396,210	487,510	578,800	670,090	761,390
30	1,860,000	167,400	214,550	313,030	407,060	500,860	594,650	688,440	782,240
31	1,970,000	177,300	220,840	322,210	419,000	515,540	612,090	708,630	805,170
32	2,080,000	187,200	227,130	331,390	430,930	530,230	629,520	728,810	828,110
33	2,190,000	197,100	233,420	340,570	442,870	544,910	646,960	749,000	851,040
34	2,300,000	207,000	239,710	349,750	454,800	559,600	664,390	769,180	873,980
35	2,420,000	217,800	246,570	359,760	467,820	575,620	683,410	791,200	899,000
36	2,540,000	228,600	253,440	369,770	480,840	591,640	702,430	813,220	924,020
37	2,670,000	240,300	260,870	380,620	494,950	608,990	723,040	837,080	951,120
38	2,800,000	252,000	268,310	391,460	509,050	626,350	743,640	860,930	978,230
39	2,940,000	264,600	276,310	403,150	524,240	645,040	765,830	886,620	1,007,420
40	3,080,000	277,200	284,320	414,830	539,430	663,730	788,020	912,310	1,036,610
41	3,230,000	290,700	292,900	427,340	555,710	683,750	811,800	939,840	1,067,880
42	3,380,000	304,200	301,470	439,860	571,980	703,780	835,570	967,360	1,099,160
43	3,600,000	324,000	314,060	458,210	595,850	733,150	870,440	1,007,730	1,145,030
44	3,680,000	331,200	318,630	464,890	604,530	743,830	883,120	1,022,410	1,161,710
45	3,750,000	337,500	322,630	470,730	612,130	753,170	894,220	1,035,260	1,176,300
46	3,890,000	350,100	330,240	482,020	626,940	771,490	916,040	1,060,580	1,250,130

- ① 연금액산정 : $\{1.44*(A+B)*P1/P+1.425*(A+B)*P2/P+...+1.2*(A+B)*P21/P\}(1+0.05n/12)$.
 "A"-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20년초과 가입월수
- ②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236,360원, 자녀/부모 1인당 연157,54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 ③ 2012년 1월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12년도 적용 1,891,771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합니다.
- ④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⑤ 기준소득월액 3,890,000원은 2012.6월까지의 상한액 3,750,000원 가입 가정

○ 장애연금

01. 장애등급의 결정	02.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03. 지급제한	04. 청구방법
05. 장애연금 청구 및 심사 절차	06. 장애연금 예상연금월액표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진행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 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자 및 농어촌 거주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장애심사규정
(2011.8.1부터 적용)
내려받기

▶ 장애등급의 결정 (법 제67조)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만약, 1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장애가 경미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 “완치”라 함은 장애의 원인이 된 부상 또는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장애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최종 상태를 말합니다.

I 상병별 완치 인정 기준

구분		완치 인정 시점(지급사유발생일)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전 완치된 경우	사지 등의 절단장애	· 절단일로부터 1월이 경과된 날 단, 추가절단 및 동일부위에 연속적으로 절단이 이루어진 경우 최종 절단일로부터 1월이 경과된 날 (상병의 고정성이 인정되고 절단부위의 상태가 안정된 때에 한함)
	사지 등의 말초신경손상으로 인한 마비	· 초진일로부터 12월이 경과한 날 (근전도상 완전 손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척추 및 골관절 등의 상병	·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통상병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고정성이 인정되는 때 단, 척추수술한 경우 수술후 6월 이내는 완치인정하지 않음.
	신경계통의 장애	· 뇌손상, 척추손상 등으로 인한 마비
		· 초진일로부터 12월이 경과한 날 (호전 가능성이 없어 고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척추손상으로 인한 완전마비
		· 초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 (근전도상 ASIA A인 경우)
	만성신부전증	· 뇌손상(뇌졸중)으로 인한 식물인간상태
		· 초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
만성신부전증	인공투석 요법시행	· 주 2회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신이식 수술	· 신이식 수술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
	눈의 장애	· 안구 적출술시 수술일
	안면장애	· 수술적 처치등으로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 최종수술 후 6개월 경과한 날

I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

장애등급 결정 및 이를 위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행하고 있으며, 적절한 심사를 위하여 공단은 전문과 목별로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자문의사 위촉의 선정기준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 국·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자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그 심사결과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장애연금수급권자는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수급권 소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I 다른 장애등급과 다른 점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등록증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1~6등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는 1~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구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급여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이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 여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장애인등록증만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I 장애의 중복조정 및 등급변경 (법 제69조)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또다른 장애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후의 장애를 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기존의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60세 이전에 장애연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수급요건	장애등급	급여수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다만, 1년 6개월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60세전에 악화된 경우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1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 지급제한

Ⅰ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법 제85조)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지급사유발생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 미납제한은 일본과 독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전체 자격유지 기간의 2/3에 미달할 때는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 납부기간과 대체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Ⅰ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법 제114조)

국민연금가입자가 제 3자의 행위에 의해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장애연금을 다시 지급합니다.

Ⅰ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113조)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Ⅰ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지급제한 (법 제82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청구방법

Ⅰ 청구인

장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Ⅰ 청구기한

장애연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

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장애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07.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13.5.1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08.5월~2013.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13.6월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 청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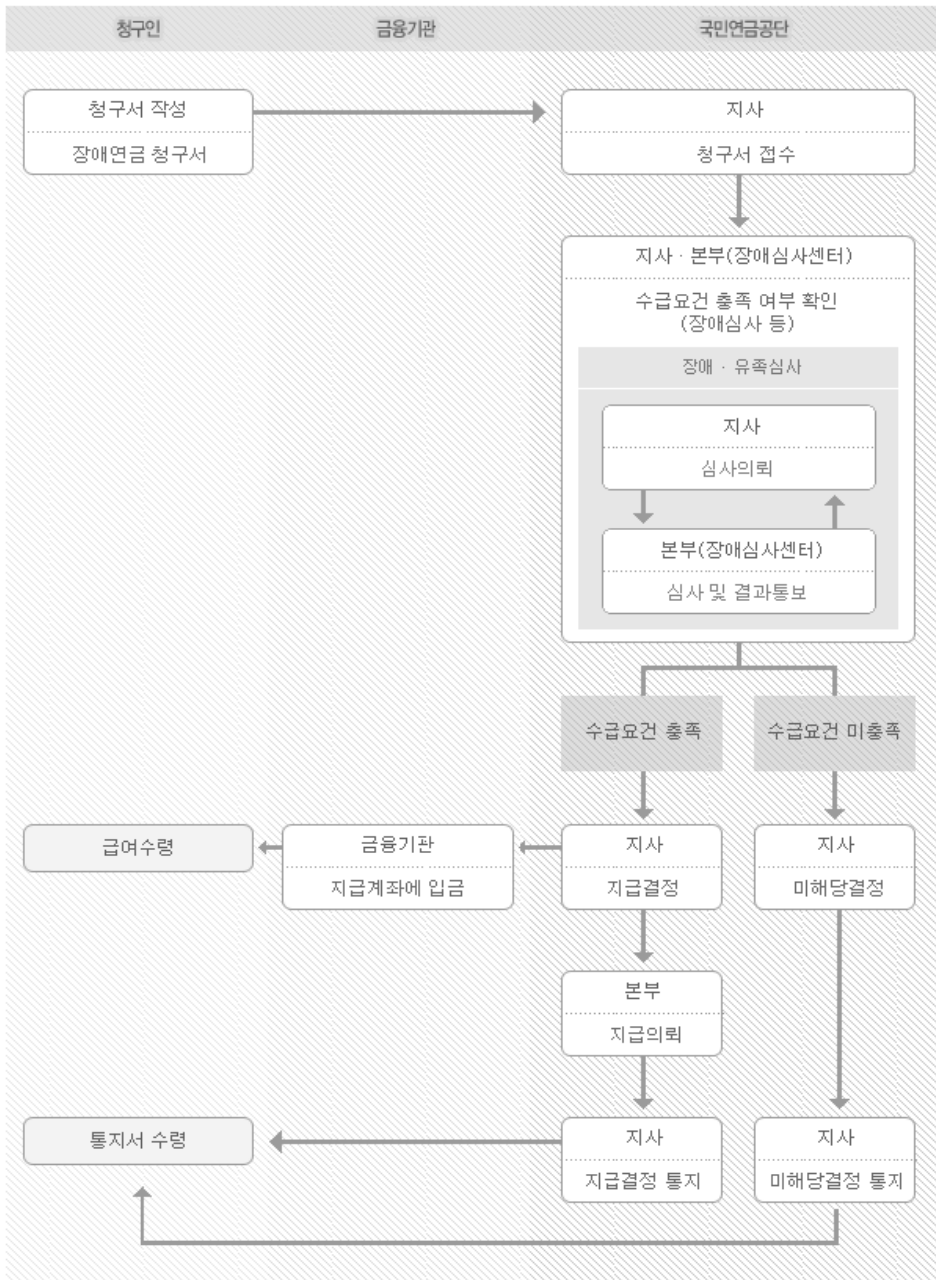
현재 급여청구는 크게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나뉘볼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 장애발생 경위(신고)서 (공단서식) · 장애진단자료 · 진료기록지, 필름(X-ray, CT, MRI)등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 (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 도장 (서명가능) · ※ 장애연금 변경신청시 : 장애연금변경 신청서	· 1. 부양가족연금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생계유지확인시 필요한 관련 서류 · 2. 장애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소견서 · 국민연금지체(상지관절 운동장애) 소견서 · 국민연금지체(하지관절 운동장애) 소견서 · 국민연금지체(척추장애) 소견서 · 국민연금지체(사지마비장애) 소견서 · 3. 최초 진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 초진 소견(진단)서 또는 초진 당시 진료기록 · 4.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제9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재법, 근기법,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 5. 제3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제3자 가해 신고서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 구비서류는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지사 찾기

▶ 장애연금 청구 및 심사 절차



■ 심사 소요기간 및 심사부서

장애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공휴일 제외되며, 자료를 보완하거나 직접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 있을 수 있음) 이내에 하게 되며, 공단지사에 장애연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이를 장애심사센터로 심사의뢰를 하고 장애심사센터에서는 의학적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연금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 때, 절단장애와 같은 비교적 정형화되고 단순한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심사센터로 의뢰하지 않고 지사에서 직접 자문의사의 자문을 거쳐 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지급하게 되므로, 장애심사는 이러한 질병이나 부상의 가입중 발생여부, 장애등급 등을 심사하는 절차가 됩니다.

▶ **장애연금 예상월액표**

(단위 : 원/월)

순번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평 균액(8값)	연금보험료(9%)	장애 1급	장애 2급	장애 3급	일시보상금 (장애4급)
1	240,000	21,600	240,000	204,650	153,480	6,906,930
2	250,000	22,500	250,000	205,610	154,200	6,939,330
3	260,000	23,400	258,210	206,570	154,920	6,971,730
4	270,000	24,300	259,410	207,530	155,640	7,004,130
5	290,000	26,100	261,810	209,450	157,080	7,068,930
6	310,000	27,900	264,210	211,370	158,520	7,133,730
7	340,000	30,600	267,810	214,250	160,680	7,230,930
8	370,000	33,300	271,410	217,130	162,840	7,328,130
9	400,000	36,000	275,010	220,010	165,000	7,425,330
10	440,000	39,600	279,810	223,850	167,880	7,554,930
11	480,000	43,200	284,610	227,690	170,760	7,684,530
12	520,000	46,800	289,410	231,530	173,640	7,814,130
13	570,000	51,300	295,410	236,330	177,240	7,976,130
14	620,000	55,800	301,410	241,130	180,840	8,138,130
15	670,000	60,300	307,410	245,930	184,440	8,300,130
16	730,000	65,700	314,610	251,690	188,760	8,494,530
17	790,000	71,100	321,810	257,450	193,080	8,688,930
18	850,000	76,500	329,010	263,210	197,400	8,883,330
19	920,000	82,800	337,410	269,930	202,440	9,110,130
20	990,000	89,100	345,810	276,650	207,480	9,336,930
21	1,060,000	95,400	354,210	283,370	212,520	9,563,730
22	1,130,000	101,700	362,610	290,090	217,560	9,790,530
23	1,210,000	108,900	372,210	297,770	223,320	10,049,730
24	1,290,000	116,100	381,810	305,450	229,080	10,308,930
25	1,380,000	124,200	392,610	314,090	235,560	10,600,530
26	1,470,000	132,300	403,410	322,730	242,040	10,892,130
27	1,560,000	140,400	414,210	331,370	248,520	11,183,730
28	1,660,000	149,400	426,210	340,970	255,720	11,507,730
29	1,760,000	158,400	438,210	350,570	262,920	11,831,730
30	1,860,000	167,400	450,210	360,170	270,120	12,155,730
31	1,970,000	177,300	463,410	370,730	278,040	12,512,130
32	2,080,000	187,200	476,610	381,290	285,960	12,868,530
33	2,190,000	197,100	489,810	391,850	293,880	13,224,930
34	2,300,000	207,000	503,010	402,410	301,800	13,581,330
35	2,420,000	217,800	517,410	413,930	310,440	13,970,130
36	2,540,000	228,600	531,810	425,450	319,080	14,358,930
37	2,670,000	240,300	547,410	437,930	328,440	14,780,130
38	2,800,000	252,000	563,010	450,410	337,800	15,201,330
39	2,940,000	264,600	579,810	463,850	347,880	15,654,930
40	3,080,000	277,200	596,610	477,290	357,960	16,108,530
41	3,230,000	290,700	614,610	491,690	368,760	16,594,530
42	3,380,000	304,200	632,610	506,090	379,560	17,080,530
43	3,600,000	324,000	659,010	527,210	395,400	17,793,330
44	3,680,000	331,200	668,610	534,890	401,160	18,052,530
45	3,750,000	337,500	677,010	541,610	406,200	18,279,330
46	3,890,000	350,100	693,810	555,050	416,280	18,732,930

주)

① 연금액산정 : $1.44(A+B)(1+0.05n/12)$.

"A"-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평균소득월액,

"n"- 20년초과 가입월수(상기 예상연금월액은 가입기간 20년이하 기준임)

②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236,360원, 자녀/부모 1인당 연157,54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③ 2012년도 1월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12년도 적용 1,891,771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합니다.

④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⑤ 기준소득월액 3,890,000원은 2012.7월부터 가입 가정

○ 유족연금

01.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02. 유족의 범위	03. 지급제한	04. 청구방법
05. 유족연금 청구 및 심사 절차	06. 유족연금 예상연금월액표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에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수급요건	급여수준	
	가입기간	연금액
·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수급권자 · 가입자(다만 가입기간 1년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 함) · 가입기간 10년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이내의 초진일로 부터 2년이 내에 사망한 때	10년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이상 20년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족의 범위 (법 제73조)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 배우자
- 자녀 :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 지급제한

Ⅰ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법 제76조)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 ①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 ② 사망자의 18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 (시행령 제45조)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2012년의 경우 월 1,891,771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미납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제한 (법 제85조)

가입자의 사망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지급사유발생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 미납제한은 일본과 독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전체 자격 유지기간의 2/3에 미달할 때는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의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 납부 기간과 대체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법 제114조)

국민연금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족이 수령한 손해 배상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간이 종료 된 후 유족연금을 다시 지급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113조)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지급제한 (법 제84조)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되지만, 다음의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법 제75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와의 신분관계에 변동이 생기거나 연금급여에 의한 생계 보호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유족연금수급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 ①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②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 ③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 ④ 장애2급 이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자녀나 손자녀의 수급권자가 18세에 도달한 때
- ⑤ 장애2급 이상이어서 유족연금을 받던 자가 장애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 ⑥ 사망자의 사망당시 태아가 출생하였을 때(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인정하므로, 자녀보다 후순위로 유족연금을 받던 자의 수급권은 소멸)

▶ 청구방법

Ⅰ 청구인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함

[예외]

-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청구 가능
-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Ⅰ 청구기한

유족연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07.1.25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하다가 2013.5.1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08.5월~2013.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13.6월부터는 매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Ⅰ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Ⅰ 청구방법

현재 급여청구는 크게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나뉘볼 수 있습니다.

I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추가 사망 경위(신고)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없는 경우 사망에 관한 인우확인서 또는 등록사무 처리관서 제출용 사망증명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 (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 (서명가능)	▪ 1. 부양가족연금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권자가 배우자이며,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2. 초진일 심사 필요시 ·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초진일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 3.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제9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재법, 근기법 또는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 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 4.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제3자 가해 신고서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 유족연금 청구 및 심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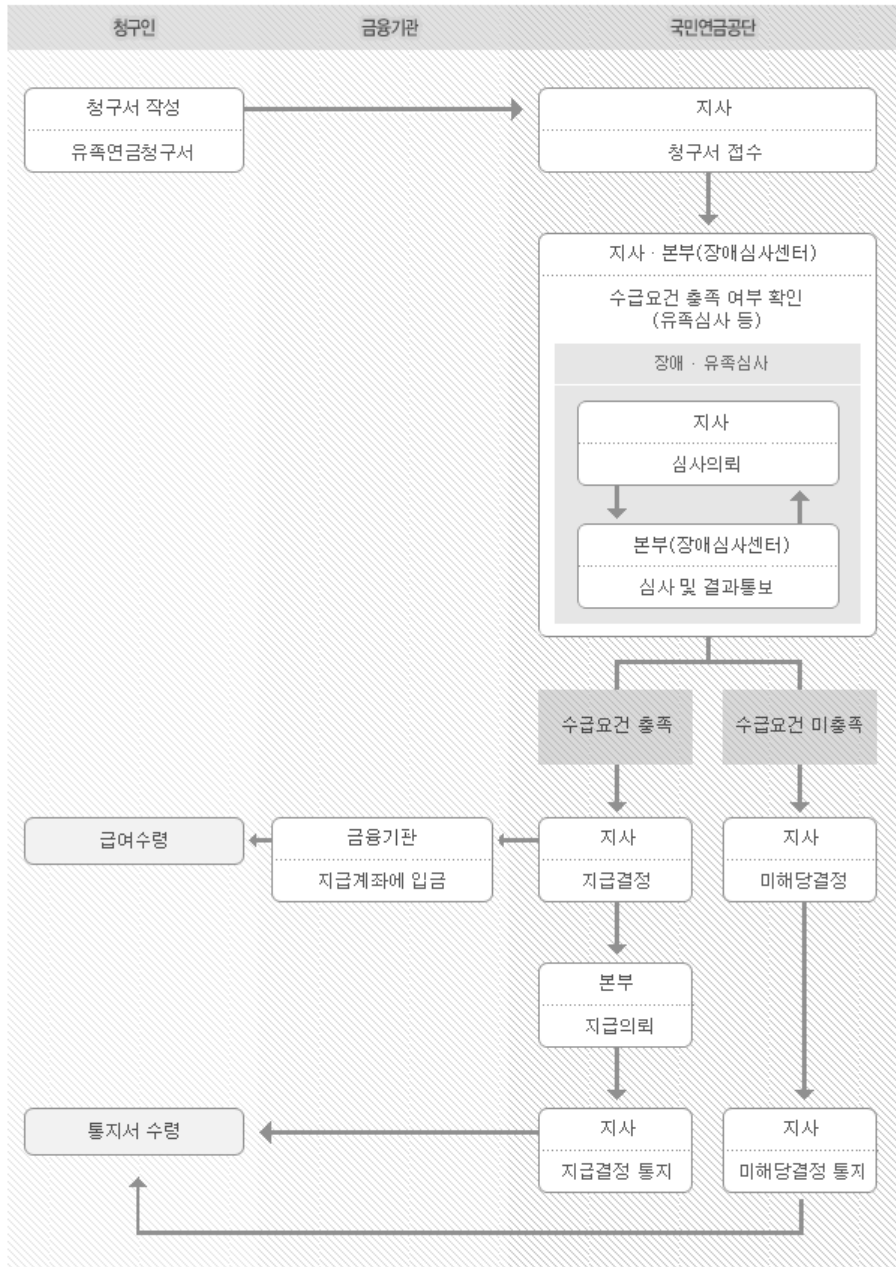
I 유족연금 심사 (법 제72조)

유족연금의 경우 급여지급청구서 처리절차의 과정을 거칠 때 일반적으로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심사를 거쳐서 지급결정하게 됩니다.

- 즉,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가입중인 사람)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중에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며,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생긴 질병으로 가입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I 심사소요기간 및 심사부서

유족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공휴일 제외되며, 자료를 보완하거나 직접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 있을 수 있음) 이내에 하게 되며, 공단지사에 유족연금의 청구서가 접수되면 이를 장애심사센터로 심사의뢰를 하고 장애심사센터에서는 의학적 자문회의를 거쳐 유족연금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주)

- ① 가입자 사망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자녀/부모 1인당 연157,54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 ② 2012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12년도 적용 1,891,771원)으로 산정(10년 미만은 2012년 1월 가입, 10년~20년 미만은 1998년 1월 - 2012년 12월(15년), 20년은 1993년 1월 - 2012년 12월(20년)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금액 산정)
- ③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단,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족연금 예상월액표

(단위 : 원/월)

순번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평균액(B값)	연금보험료(9%)	가입기간		
			10년미만	10년~20년미만	20년
1	240,000	21,600	102,320	153,260	200,090
2	250,000	22,500	102,800	153,960	200,950
3	260,000	23,400	103,280	154,670	201,800
4	270,000	24,300	103,760	155,370	202,660
5	290,000	26,100	104,720	156,780	204,380
6	310,000	27,900	105,680	158,190	206,100
7	340,000	30,600	107,120	160,300	208,670
8	370,000	33,300	108,560	162,410	211,250
9	400,000	36,000	110,000	164,530	213,830
10	440,000	39,600	111,920	167,340	217,260
11	480,000	43,200	113,840	170,160	220,700
12	520,000	46,800	115,760	172,980	224,130
13	570,000	51,300	118,160	176,500	228,430
14	620,000	55,800	120,560	180,020	232,720
15	670,000	60,300	122,960	183,540	237,010
16	730,000	65,700	125,840	187,760	242,170
17	790,000	71,100	128,720	191,990	247,320
18	850,000	76,500	131,600	196,210	252,470
19	920,000	82,800	134,960	201,140	258,480
20	990,000	89,100	138,320	206,070	264,490
21	1,060,000	95,400	141,680	211,000	270,500
22	1,130,000	101,700	145,040	215,930	276,520
23	1,210,000	108,900	148,880	221,560	283,390
24	1,290,000	116,100	152,720	227,200	290,260
25	1,380,000	124,200	157,040	233,540	297,980
26	1,470,000	132,300	161,360	239,870	305,710
27	1,560,000	140,400	165,680	246,210	313,440
28	1,660,000	149,400	170,480	253,250	322,030
29	1,760,000	158,400	175,280	260,290	330,620
30	1,860,000	167,400	180,080	267,340	339,200
31	1,970,000	177,300	185,360	275,080	348,650
32	2,080,000	187,200	190,640	282,830	358,100
33	2,190,000	197,100	195,920	290,570	367,540
34	2,300,000	207,000	201,200	298,320	376,990
35	2,420,000	217,800	206,960	306,770	387,290
36	2,540,000	228,600	212,720	315,220	397,600
37	2,670,000	240,300	218,960	324,370	408,760
38	2,800,000	252,000	225,200	333,530	419,930
39	2,940,000	264,600	231,920	343,390	431,950
40	3,080,000	277,200	238,640	353,240	443,970
41	3,230,000	290,700	245,840	363,810	456,850
42	3,380,000	304,200	253,040	374,370	469,730
43	3,600,000	324,000	263,600	389,860	488,630
44	3,680,000	331,200	267,440	395,490	495,500
45	3,750,000	337,500	270,800	400,420	501,510
46	3,890,000	350,100	277,520	410,280	513,530

○ 반환일시금

01. 수급요건

02. 급여수준

03. 청구방법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수급요건 (법 제77조)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는 사망 당시 보험료를 2/3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1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니어서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외이주의 경우 거주여권소지자나 영구영주권취득자에 한함. 임시영주권취득자는 해당되지 않음)
-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로서,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60세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어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할 수 있고,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이 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현재 반환일시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60세이나, 그 지급연령이 높아져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적용)

▶ 급여수준 (법 시행령 제50조)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가입기간 동안의 이자와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이때 이자율은 가입기간중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고 상실후부터 지급사유발생일까지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합니다.

※ 이자율은 매년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2012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3.1%,

※ 2012년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2.8%

❏ 청구방법

Ⅰ 청구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국외이주자나 국적상실자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Ⅰ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 국외이주·국적상실 및 타공적연금 가입사유(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제외)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2007.7.23 이후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2007.7.23 전에 60세에 도달하고 2007.7.23 이후 사망한 자도 포함)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롭게 진행됨.

Ⅰ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Ⅰ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우편청구
- 유선청구, 팩스청구 : 총 납부보험료 150만원 이하인 경우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유선 및 팩스 청구 불가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60세 도달인 경우 가능) ☞ 바로가기

Ⅰ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중 1개) •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 (계좌번호 제시로 같음 가능) • 도장 (서명가능)	• 1.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 2. 국외이주 • 출국전 청구시 1개월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비행기 티켓 등) • 거주여권소지자 - 거주여권 사본 • 영주권자(거주여권 발급받지 않은경우) • 영주권 사본 (*임시 또는 조건부 영주권 제외)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3.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기본증명서 등 국적상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일시금 제도는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여 평생동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연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아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미국, 독일, 스웨덴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반환일시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사망일시금

01.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02. 청구방법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하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제보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법 제80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 ① 배우자
- ② 자녀
- ③ 부모
- ④ 손자녀
- ⑤ 조부모
- ⑥ 형제자매 또는
- ⑦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위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장제보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되는 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소득(가입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중의 평균소득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하며 그 내역을 수록한 지급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청구방법

Ⅰ 청구인

사망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함

[예외]

-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가 가능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가 가능 : 수급권자가 군복무, 수감,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Ⅰ 청구기한

사망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Ⅰ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우편청구
- 유선청구, 팩스청구 : 총 납부보험료 150만원 이하인 경우

■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 생계유지인정 관계서류
- **수급권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중 1개)
-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 (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권자가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인 경우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도장 (서명가능)

○ 외국인에 대한 연금급여

01. 수급요건
02. 급여수준
03. 청구방법
04. 외국인 반환일시금
공항지급서비스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각 종류별 연금항목 참조)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가입자에게는 본국 귀환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2007년 5월 11일 이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외국인이 본국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2007.8.29.부터는 출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단, 비행기 티켓 등 1개월 이내에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출국 전이라도 청구서 접수는 가능)

▶ 수급요건 (법 제126조 및 제127조)

외국인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①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③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 법제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 >

(2011.11.1 기준)

국적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사회 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 (14개국)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 (30개국)			
		최소 가입기간 6개월 이상(1개국)	최소 가입기간 1년이상(10개국)	최소 가입기간 2년이상(1개국)	최소가입기간 관계없이 인정(18개국)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독일 미국 체코 캐나다 프랑스 헝가리 호주 벨기에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벨리즈	그레나다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요르단 짐바브웨 카메룬 콩고 태국 토고 부탄	베네수엘라	가나 말레이시아 바누아투 버뮤다 수단 스리랑카 스위스 우간다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케냐 콜롬비아 터키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필리핀 홍콩

▶ 급여수준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도 내국인의 반환일시금과 같이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가입기간 동안의 이자와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이때 이자율은 가입기간중에는 3년 만기 정기에금이자율을 적용하고 상실후부터 지급사유발생일까지는 1년 만기 정기에금이자율 적용합니다.

※ 이자율은 매년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2012년 3년 만기 정기에금이자율 : 3.1%

※ 2012년 1년 만기 정기에금이자율 : 2.8%

▶ 청구방법

Ⅰ 청구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해외거주를 사유로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거나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Ⅰ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 국외이주·국적상실 및 타공적연금 가입사유(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제외)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이후 60세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반환일시금을 지급함.

Ⅰ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Ⅰ 청구방법

본인이 해외거주를 사유로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거나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을 통하여 우편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 확인과 본인여부 확인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I 구비서류

청구 방법	구비서류
수급권자 내방청구	급여지급청구서 수급권자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 ※ 본국귀환(국외이주)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외국인의 경우 출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단, 비행기 티켓 등 1개월 이내에 출국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출국전 청구서 접수 가능)
사자(使者)청구	급여지급청구서 수급권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사자(使者) 신분증
대리청구	• 외국인이 본국에서 국내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는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 • 급여지급청구서상 '대리청구 사항'란에 기재 후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을 필하고,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급여청구서상의 대리청구사항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대리관계에 대한 수급권자의 위임장에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 인정) • 수급권자 본인 신분증 사본(여권, 사회보장카드, 기타 신분증 사본 등 외국인 본국 발행 공적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외국인 본국의 행정관청이 수급권자 본인이 급여지급청구서('대리청구 사항'란 기재 또는 위임장을 작성하였음을 증명하고 이를 주한 외국대사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청구서(위임장) 및 수급권자 본인계좌 확인 서류에 공증 및 영사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됨.
우편청구 (수급권자 본인청구)	• 급여지급청구서(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 필할 것) • 수급권자 여권 사본 • 수급권자 예금계좌

※ 해외송금을 원할 경우 추가서류

- 해외송금 신청서
- 통장 또는 거래내역서 등 기타 본인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국내에서의 번역공증(한국어 번역) 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확인인 가능하여야 함.

▶ 외국인 반환일시금 공항지급서비스

외국인이 본국귀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지 않도록 출국일 당일 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I 신청대상

본국귀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 1개월 이내에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귀국 예정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단, 퇴직한 회사에서 출국일 전일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 퇴사신고를 해야 공항지급이 가능

※ 출국일자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공항지급이 불가하므로, 국내계좌 또는 해외송금방법을 이용

※ 비행기 출발예정시각이 11시 ~ 22시인 경우 공항지급이 가능

I 신청방법

- ① 반환일시금 청구시 공항지급 방식 선택
- ② 공항지급을 받지 못할 경우와 추가지급을 대비하여 반드시 국내계좌 또는 해외송금계좌도 신고

Ⅰ 공항지급 수령방법

- ① 반환일시금 청구서, 공항지급 신청서 제출 및 접수증 수령 :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인천공항사무소 제외)
- ② 출국일 당일 국민연금 인천공항사무소에 접수증, 여권, 비행기티켓 제출후 반환일시금지급결정통지서 및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은행제출용) 수령(09:00~17:00까지)
※ 국민연금 인천공항사무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 2번 출구
- ③ 신한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에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와 여권을 제출하고 환전영수증 수령(17:30까지)
- ④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신한은행환전소에서 환전영수증, 여권을 제출한 후 환전된 금액을 수령(21:00까지)

○ 심사청구

국민연금법에는 가입자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시정, 보완 요구하는 경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또는 징수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행정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심사청구**(법 제108조)

Ⅰ **심사청구 대상**

다음과 같은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① 가입자의 자격 취득 / 상실 통지
- ② 기준소득월액 결정 · 통지
- ③ 노령(장애 / 유족)연금 및 반환(사망)일시금 미해당 / 부지급 결정 · 통지
- ④ 급여지급 결정 · 통지
- ⑤ 연금 수급권 취소 결정 · 통지
- ⑥ 부당이득 환수 결정 · 통지 등

■ **주의사항**

※ 2011.1.1.부터 연금보험료 징수 관련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연금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Ⅰ **청구인**

- ① 국민연금법 :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② 행정심판법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Ⅰ **피청구인 :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Ⅰ **심사청구기간**

심사청구는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국민연금법 제108조)

Ⅰ **심사청구 방법**

청구인이 직접 공단을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심사청구 바로가기

Ⅰ **심사청구 처리절차**



Ⅰ **심판기관** (법 제109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또는 징수심사위원회

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절차](#)

심사청구 사안을 심사하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각각의 심사청구 사안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처분이 적법·타당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공단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각하, 기각 또는 인용(처분취소 또는 변경)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30일 연장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Ⅰ [심사청구 서식](#)

Ⅰ [심사청구 등 관련 용어 해설](#)

○ 재심사청구

📌 재심사청구(법 제110조, 제112조)

Ⅰ 재심사청구 대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국민연금법 제110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심사청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Ⅰ 피청구인 :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Ⅰ 심사청구기간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국민연금법 제110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Ⅰ 재심사청구 방법

청구인이 직접 공단을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심사청구 바로가기

Ⅰ 심판기관(법 제111조)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Ⅰ 재심사청구 처리절차



Ⅰ 재심사청구 서식

Ⅰ 재심사청구 등 관련 용어 해설

○ 국민연금 심사위원회

▶ 국민연금 심사위원회

Ⅰ 위원회 소개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처분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 번 심사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Ⅰ 위원회 구성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 중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 ① 공단의 실장급 이상의 임직원
- ②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 ③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 ④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 ⑤ 변호사이거나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Ⅰ 위원회 운영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에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와 변호사이거나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각2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합니다.

Ⅰ 위원회 개최 일정 알림